
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
번 호 19449

발의연월일 : 2019. 3. 29.

발의자 : 신동근 · 윤일규 · 김철민
 강훈식 · 이석현 · 기동민
 김태년 · 전재수 · 이종걸
 유호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자격을 부여받아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,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.

이에 개정안에서는 ‘한국어교원’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,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·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.

한편,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‘국가전문자격증 대여·알선 행위 제재 강화(제2018-507호)’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(안 제19조의3 신설 등).
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부여할”을 “부여하고, 자격증을 발급할”로 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자격취소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2.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

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국어의 보급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9조(국어의 보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부여하고, 자격증을 발급할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의3(자격취소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</p> <p>2.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</p>